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3월 23일

고 흥 군 수



1 모 집 개 요

- 모집기간 : '21. 3. 24.(수) ~ '21. 4. 9.(금)
- 사업대상자 : 귀어인 또는 재촌비어업인
 - 귀어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자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 령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
 -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2016년 1월 1일)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재촌 비어업인은 이주기한 미적용
 - * 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유통업에 한함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단, 재촌 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학교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①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는 제외) 등에 재학 중인 자
- ②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자
- ③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④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⑤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자
- ⑦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양식업의 면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처분 후 지원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⑧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 귀산촌인 창업·주택구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 ※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별도 신청 가능
- ⑨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낙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낙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⑩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용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2년간)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창업자금 :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주택구입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지원자금액

- 대출한도
 - ① 창업자금 : 1인당 300백만원 이내
 - ②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이내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
- 대출기한 : 용자추천 당해년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수산분야)

- ① 양식장·가공공장 등 신축부지 구입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② 어선(허가어선은 1척에 한함)·양식장·가공공장·염전 등 구입비
- ③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④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 ⑤ 종자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 ⑥ 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⑦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 어구 등 자재 구입)

▪ 창업자금(어촌비즈니스분야)

- ①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물레저 체험시설 건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② 「수산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③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구입(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① 대상지역 : 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②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지원제외

- ① 어획물운반업
- ② 일반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횃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③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구입
- ④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보조·융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지원(융자) 불가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② 창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읍면사무소 담당자 확인 必
- ③ 신용조사서 1부.(수협은행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 ⑤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문의처 : 고흥군 인구정책과(☎061-830-6848, 5428)

4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대상자 선정 관련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 기타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붙임2 시행지침을 참고 하시거나, 고흥군 인구정책과(☎830-6848, 5428) 또는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구분	귀어업인(), 재촌비어업인()		주민등록번호	-			
	성명	(한자)						
	전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현주소	* 재촌비어업인은 현주소만 기입			H.P :			
	학력		귀어진 직업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근무처 :)				
	어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년	교육실적	분야(월, 주) *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어업경영분야(업종/품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어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경영규모 : - 시설장비 : *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표 2. 다. 선도우수경영인 평가기준 참조							
사업 신청 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창업(수산분야)			계	보조	융자		
	창업어촌비즈니스							
	주택구입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창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은행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주민등록표 등·초본 6. 사업자등록증명 7.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9.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5, 6, 7, 8, 9 등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홍군수 귀하								

* 귀어업인 등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 당해연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이 소진된 경우는 자금 집행이 중단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m², Ton)

	계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m²)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계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토지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자구입									
주택구입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토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대지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